

제 호

이 루 자 동 차 사 용 신 고 필 증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인

출장소장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 사용자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 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가.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서 2025년 4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 한 대형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따릅니다.
가.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나.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다.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은 이륜자동차는 제외)는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입니다.
 -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증을 제출하고 튜닝승인을 받은 후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증을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한다.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3쪽)

1. 제원(구조)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원동기형식	
총 중 량		기 통 수	
배 기 량		연 식	
길 이		높 이	
너 비		승 차 정 원	
적 재 량		원동기마력	
비 고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4쪽)

2-1. 정기검사 사항					
연월일 부터	연월일 까지	주행거리	검사일	검사기관	검사책임자 확인
2-2. 튜닝(구조·장치변경)검사 사항					
튜닝내역		검사일	검사기관	검사책임자 확인	
2-3. 임시검사 사항					
검사내역		검사일	검사기관	검사책임자 확인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5쪽)

3. 신고(변경사항)			
이륜자동차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신고연월일 확인기관인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6쪽)

4.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명령일	명령내역	조치내역	확인일 확인기관 인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